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03. 16.(목)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04
제출일자	2023.02.21
회부일자	2023.03.02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윤승오 의원 외 10명

2.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41호, 2019. 8. 20.)」이 개정되었음

○ 이에,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학교장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13조제3호)

4.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 반영(입법정책담당관 법제조사팀)

○ 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청 행정과)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교육청 감사관)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학생생활과)

○ 해당부서의견 : 의견없음(학생생활과)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6.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사안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직원의 조치)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학교폭력사건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본 조항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본조신설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제3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2[개정 2019. 8. 20.]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사건에 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되고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위원회 명칭은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2년 개정판30~31page)

1 2022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30~31page)

2장 사안조사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2>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양식2-4>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학교폭력 실태조사**

-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